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508
------	-----

2019. 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3월 27일, 김정태 의원 외 24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9. 4.25) 상정, 검토보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연구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 시의회(이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사업에 자치구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나. 정관변경의 의회 보고(안 제2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의 목적, 명칭, 소재지,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이사회 등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승인토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지방연구원법 상의 정관 변경 절차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 이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의 무분별한 변경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지방연구원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정관변경 전속권¹⁾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개정안은 사전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보고 후 시의회의

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관)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체장의 정관 변경
인가 권한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음.

- 또한 대법원 역시 조례상 사전 보고나 동의, 의견청취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 이러한 취지로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19개 출자·출연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²⁾ 정관 변경의 사전보고가 이러한 지방연구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임³⁾.

다.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안 제3조제6호)

- 안 제3조제6호는 연구원의 사업에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의 경우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 사전보고 의무'를 명시한 기관은 아직까지 없음.

- 서울시정과 자치구정의 연계성, 일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실태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구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당한 측면이 있음.
- 서울연구원 또한 2019년 2월부터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정연구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 설치 개요

- 설 립 : 서울연구원(도시경영연구실 소속 임시조직으로 설치)
- 구성인원 : 53명 내외(정규직 3, 초빙연구원 50)
 - 센터장 : 1명(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겸임)
 - 정규직(박사·석사) : 2명(신규 공개모집)
 - 초빙연구원(박사·석사) : 50명(신규 공개모집, 구별 1~2명 지원)
- 운영기간 : '19.5월~'21.12월
 - 구정연구단 연구실적, 구정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여부 검토
- 운영예산 : 2,210백만원(출연금 2,000백만원, 기본재산 전입 210백만원)
 - 출연금 : 인건비 1,865백만원, 연구과제비 60백만원, 회의비·센터운영경비 등 75백만원
 - 기본재산 전입 : 희망 자치구 증가(15개→25개)에 따른 필요인력 증가(30명→50명) 인건비 201백만원

〈서울연구원 구정지원센터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직급	인원	세부사항
정규직	센터장	1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중 겸임
	연구위원	10	구정연구지원센터 전담(1), 자치구 연구경험자로 분야별 연구위원 겸임(9)
	연구원	3	구정연구지원센터 전담(1), 겸임(2)
비정규직	연구위원	25	자치구 파견, 연 단위 계약(3년 계약)
	연구원	25	자치구 파견, 연 단위 계약(3년 계약)

- 따라서 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연구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08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7일

발 의 자 : 김정태, 강동길, 권수정, 권영희,
김달호, 김소영, 김호평, 김희걸,
박순규, 봉양순, 송재혁, 이광호,
이병도, 이성배, 이영실, 이정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정재웅,
정진술, 채인묵, 최웅식, 한기영,
홍성룡 의원 (25명)

1. 제안이유

서울연구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토록 함으로써 재단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감시권한을 강화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자치구의 행정과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서울연구원의 사업에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연구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
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
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